

■ 판례 동향

대마 성분(CBD)이
함유된 사료용 물품
통관보류와 관련된
행정절차 처분성

■ 품목분류 동향

카카오 버터 분류 사례

■ 개정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美, 對베트남 수입 늘자 규제 강화 ...
韓에도 '관세 불뚱' 될라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9월 23일(통권 제2099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美, 對베트남 수입 늘자 규제 강화... 韓에도
‘관세 불뚱’ 될라

06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 12** 관세행정안내
선하증권에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
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 21** 질의응답사례
삼칠가루의 HS Code

판례동향

- 23** 관세판례해설
대마 성분(CBD)이 함유된 사료용 물품
통관보류와 관련된 행정절차 처분성

품목분류동향

- 39** 품목분류해설
제8402호[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54** 품목분류 M.A.P
카카오 버터 분류 사례
- 58** 세번 바로잡기
관자맛 혼합조미료
- 59** 상식 밖의 상품학
“토마토는 채소” 판결로 소송까지?

최신개정법령

- 62**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美, 對베트남 수입 늘자 규제 강화 ··· 韓에도 '관세 불똥' 될라

1988~2024년 8월 기준 베트남 누적 투자 건수 및 금액은 한국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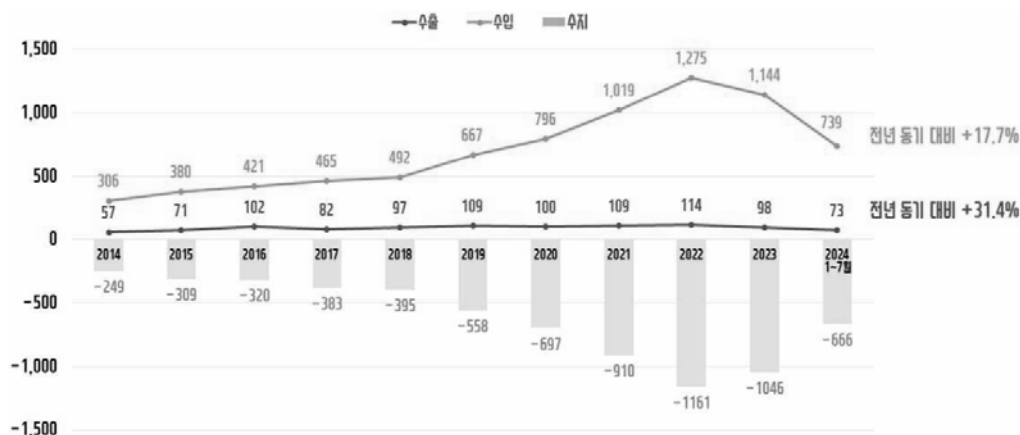
베트남의 對美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주요 생산기지인만큼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9월 16일 '美·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의해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국의 대선 향방과 함께 향후 입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8월 2일 美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이 비시장경제(NME, Non-Market Economy) 국가로 계속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분류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2개국이다. 이 국가에는 덤핑 조사과정에서 시장경제국과 다른 적용을 받고, 일반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국 가격(베트남)이 아닌 제3국(베트남과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시장경제 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율의 덤핑마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 추이 ●

(단위 : 억 달러)



출처 : 한국무역협회

美 상무부는 2002년 베트남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온 베트남은 자국 경제 개혁 조치와 점차 긴밀해지는 양국관계 등을 반영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베트남 무역 지위 재검토를 두고 미국 내 산업계 의견은 엇갈렸다. 의류 등 소매업 관련 단체는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격상을 지지한 반면, 철강업 및 노동계는 관세율 인하로 인한 자국 내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美 철강협회(AISI)는 美 무역법을 회피하고 환율 조작 및 제한적 무역 관행을 지속하는 국가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면 자국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중국에 더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1~7월 기준 베트남은 미국의 수입대상국 7위, 수출대상국 30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은 2014년 306억 달러에서 2023년 1,144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적자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에서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3위다.

한편 198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누적 기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은 한국이다. 누적 투자 금액은 877억 8,000만 달러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 모두 중국이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 1988~2024년 8월 국가별 對베트남 누적 투자 건수 및 금액 ●

순위	국가	누적 투자 건수	누적 투자 금액
1	한국	1만 48건	877억 8,000만 달러
2	싱가포르	3,792건	807억 달러
3	일본	5,420건	792억 7,000만 달러
4	중국(홍콩 포함)	7,543건	659억 5,000만 달러
5	대만	3,218건	404억 8,000만 달러
전체		4만 1,142건	4,913억 9,000만 달러

출처 : 한국무역협회(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무역협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조치가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이미 제조업 기반이 갖춰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무역규제 신규 조사는 2002~2019년 연 평균 1~2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총 5건(반덤핑 4건, 상계관세 1건)의 조사가 개시됐다. 올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됐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이호권 과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미국 수출 비중이 크기에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엄격한 수입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11월에 美 대선이 있는 만큼 정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중고 승용차도 인천공항서 수입통관 가능

관세청, 「수입통관고시」 개정으로 서류제출 생략 확대·통관지 제한 완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중고 승용차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AEO 우수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및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어서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 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분할 선적돼 반입되는 것은 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

통관지 세관 제한도 완화됐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해졌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를 비롯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있었다. 이에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단행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 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사례를 비롯해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어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 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규제를 해소할 나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2025 예산안 6,583억원 편성 … 해외 직구 대응·마약밀수 차단 중점 투자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최신 마약탐지 장비 확대 도입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해외 직구 대응, 마약밀수 차단 등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9월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예산안으로 총 6,58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관세청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해외 직구 대응과 마약밀수 차단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고객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해 해외 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한다.

그밖에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관독훈련센터를 구축해 관독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이 선정한 주요 핵심사업 두 번째는 마약밀수 차단이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해 성능 개선을 꾀하고, 철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기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해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 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더욱 높이고, 주요 마약 공급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해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마약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등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탐지견 훈련센터를 증축해 탐지견을 현재 90두에서 2027년까지 140두로 확대 양성해 최근 급증하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마약단속 관련 관세행정 연구개발(R&D)에도 힘쓴다.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를 개발해 현장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마약 단속 역량을 높인다.

주요 사업 외에도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해 화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재외공관, 해외관세관, KOTRA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체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통관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소하고,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전용선복지원사업, 동남아 항로까지 확대 ··· 항차당 420TEU 선적 공간 제공

홍해 사태 장기화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항로에 항차당 42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이 신규로 제공된다.

전용선복지원사업은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으로 해상운임 변동폭 심화에 따른 중소 수출화주 애로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가 협력해 국내 항만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선적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중소 화주 105개사다. 선복 제공에 협력하는 국적선사들은 고려해운, 장금상선, 홍아라인 등 8개사로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동남아시아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항로별로는 인도 100·싱가포르 20·말레이시아 20·태국 40·베트남 240TEU의 전용선적공간이 제공된다.

해외 온라인 유통사 판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55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69개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식구 4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는 “세관장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해외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무역협회,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위한 국회 입법 지원 요청

신기술·신사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3개 분야 국회 전달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국회의 수출 관련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과 구제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초부터 이달까지 발굴한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63건을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중 법률 개정과 법제화가 요구되는 24개 핵심 안건을 선별해 양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신기술·신사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세 가지 분야별 입법 지원 요청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및 광산 운영 R&D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다음으로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분야는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산업인데도 정부의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등 지원 필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보다 10%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무역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관계 부처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 방식 변경,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제도(RG) 한도 증액, ▲국제 물류환경 리스크 증대에 따른 물류 지원 강화, ▲KC인증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 이용 패널티 완화 등 총 25건의 정책 개선(법령 개정 2건 포함)이 이뤄졌다.

정부는 무역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 수출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000억 원 증액한 2조 원 규모로 책정한 바 있다. 또한 8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해 방위 산업, 조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구현 기자 |

식약처·KOTRA·제약바이오협회, '인니 공략' 본격화

인도네시아, 19억 '할랄 벨트' 공략 교두보 중요성 증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KOTRA,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처음으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 행사를 열었다.

9월 12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식약처와 협회,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15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9월 11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현지 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과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2024 한국·인도네시아 제약 심포지엄, ▲규제당국 양자회의, ▲민·관 대표단 간담회, ▲1:1 수출상담회, ▲현지 진출기업의 제조소 방문 등을 진행했다. ASEAN의 또다른 거점 국가인 베트남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했던 작년 7월과 달리 이번에는 KOTRA가 가세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공동으로 현지 공략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열어오던 '메디컬 로드쇼'와 처음으로 연계해 '한국·인도네시아 제약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 양국 간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2억 8,000만 명)이자 ASEAN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점 국가이기도 하다. 협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의약품 자급화 지원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제약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거나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슬람 국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약 19억 명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할랄 벨트'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요구하는 흐름에 부응할 필요성이 커진다. 결국 인도네시아 시장이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 한국·인도네시아 제약 심포지엄'에는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 양국 규제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및 관련 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유망 바이어들과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우리 의약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협업체럼 정부·공공기관·단체가 지원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규제당국 양자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식약처의 2023년 WLA(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에 대해 높게 인정했다"며, "양 기관은 상호 정보교환과 소통을 위한 공식 채널을 만들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인천세관, 압수물품 상표 제거 후 기증

인천세관은 침대 매트리스 25점, 시가 1억원 상당품을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하는 행사를 9월 12일 세관 역사박물관에서 열었다. 인천세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을 결정했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는 1점당 가격이 40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병행수입이 금지됐으나 국내로 수입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물품은 폐기처분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될 수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 25점을 폐기할 경우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폐기시 유독가스가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은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단체에 기증을 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특송업체 간담회 개최

평택세관은 9월 11일 관내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에 대한 검사 강화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방안 시행 등 특송통관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평택세관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불법 농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법규준수도 등급이 낮은 업체가 개선 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다음 분기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세관의 보다 강화된 ‘특송업체 평가관리 지침’을 알리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손 성 수

관세청 조사국장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 현

<2024년 9월 23일자>

선하증권에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 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B/L)상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협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가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하증권은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FTA 적용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1) 개요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활용되며, 수입국에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은 FTA 원산지증명서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5가지는 ① 거래 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④ 절차적 요건, ⑤ 운송 요건(직접운송 원칙)을 말한다.

FTA 실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FTA 적용 요건은 ③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수출자 및 생산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며, 상대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④ 절차적 요건 또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중요한데, 해당 요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각 협정에 맞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고, 이를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협정관세 적용신청)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한 부분이다.

(2) 원산지증명 제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원산지 제품 수출

시 상대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함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원산지증명 제도는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④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을 기관발급 체계에 의한 원산지증명, ②부터 ④까지를 자율발급 체계에 의한 원산지증명으로 나눈다.

(3) 한·EU FTA 원산지증명 방식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 문구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자율발급 형태의 FTA다.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존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고 부르지 않고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라고 부른다.

한·EU FTA는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방식을 따른다.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②에 의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취득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 수출자는 ③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

원산지신고서 방식은 유럽권의 FTA인 한·EU, EFTA, 터키, 영국 FTA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송품장 작성 방식과 표준서식을 작성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의 경우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또는 ③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서식은 부속서 3-라-1에 따르고 ③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서식은 부속서 3-라-2에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4)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한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23개 국어)로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원산지신고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자율발급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게끔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EU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생산자 또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기재 요령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항목	기재 요령
작성 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는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는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는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 (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작성 방법의 5)에는 연간 일정 수량을 한도로 적용하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기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아주 일부의 사례일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상 “The exporter of the products~”로 시작하는 원산지신고 문구에 기재해야 할 정보는 일반적으로 총 4가지로 구분하며, 작성 내용 중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③과 ④다.

- 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② 원산지
- ③ 장소 및 일자
- ④ 수출자 이름 및 서명

①부터 보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여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 건은 해당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000유로를 산정하는 기준에 송품장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돼 있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에 대한 가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 상품이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으로 함께 수입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 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이는 한·EU FTA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AEX, Approved Exporter)의 번호를 기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REX(Registered Exporter System, 등록수출자 제도) No.를 통한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를 기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해외 바이어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받는 방법 이외에도 FTA 관련 사이트(관세청 FTA 포털 등)에서 인증수출자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EU 같은 경우 각 국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자의 경우 ①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②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 확인, ③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해 유효성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에는 원산지를 기재한다. 해당 란의 작성 방법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으나, 한·EU FTA의 경우 EU 자체도 원산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언어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오류 없이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장소 및 일자에는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해 발행하는 등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급 발급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수입 당시 수출자 측에서 FTA 적용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및 EU의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사후적용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된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FTA 적용 시 ③에 대한 작성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 및 일자에 관한 부분이 '소급 발급'이 된 경우 작성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8일 물품을 프랑스에 수출했는데, 수출 당시 한·EU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었던 A社가 수출 이후에 한국세관에 수출물품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2024. 7. 25.)한 경우 기존의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품장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구는 송품장 작성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소급 발급 작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즉, 송품장 작성일자와 원산지 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예 : 소급 발급)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④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도 상황에 따라 필수기재 사항이 안될 수 있다. 이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이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와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로 나뉘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 취득 시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증 취득 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1]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한 경우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의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로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서명이 필요하다면 수기로 서명해야 한다.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에서는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Origin declarations shall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manuscript)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서는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 작성과 관련해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고 규정하고 있다.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사례에 정확한 상황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계무역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거래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한·EU FTA 당사국에 소재한 수입자는 제3국에 소재한 중계인 작성한 상업송장을 수령할 것이고, 계약상대국에서 제3국의 중계인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수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역실무상 제3국의 중계인은 자신의 상업송장 정보(가격 등)를 실제 수출국의 생산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다른 상업서류(선하증권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크게 2가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EU FTA 목적상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을 제3국 송장 등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출당사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제3국의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인정되는 상업서류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한다. 언급한대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서류라고 보면 되는데, 항공운송이 이뤄지는 경우 실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이 발행된다.

국제물품매매 계약은 국제 간 운송이 필수적이므로 해상이든 항공이든 운송서류가 발행될 것인데, 해당 서류에 한·EU FTA상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에서 제시된 선하증권상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 허용 여부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집’에 따르면 상업서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인정되는 상업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다만,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거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선하증권 등 운송 관련 서류는 협정 발효 초기에는 상업서류의 범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 ① 단일타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 ②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 *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
-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해당 지침에는 선하증권이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 기재가 허용되는 상업서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용에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답변돼 있는데, 이는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는 한·EU FTA 제16조 제4항의 ‘다른 상업서류’와 관련해 선하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에 동의한 결과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송품장, 인도증서와는 달리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

일반적인 무역 환경에서는 한·EU FTA 양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 간 거래가 이뤄지고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프랑스에 소재한 수입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중계무역 등의 상황에서 제3국 송장이 발행됐다면, 중계인은 가격, 거래선 등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자신의 상업서류 또는 운송서류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 기재를 희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EU FTA는 운송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계인 자신의 송장(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관세청의 사례에 따르면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제3국(미국)에서 발행한 송장(Invoice)에 스페인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스페인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 장소와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보수적으로 한·EU FTA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신고가 작성된 것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EFTA 집행지침에서는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와 관련해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계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③ 백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제3국 발행 송장,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④ 백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만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례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한·EU FTA의 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 사례[조심 2017관0147(2018. 12. 28.)]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결정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 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작성됐고, 그의 명판 및 서명이 날인돼 있는 점,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스위스 판매자가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회신한 점, 한·EU FTA 상 비당사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리 작성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취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정되는 상업서류,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 가능 주체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관리 전담자, 관세사 등 FTA 관련 업무 담당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산지신고 문구 작성 이슈가 있을 때는 협정 및 관세청의 해석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삼칠가루의 HS Code

삼칠가루는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관세율표에서는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211.20호에 ‘인삼’이, 제1211.20.21호에 ‘백삼으로 만든 것’이, 제1211.20.2110호에 ‘가루’가 세분류됩니다.

삼칠(Panax notoginseng)은 인삼속 식물로서, 문의한 물품이 삼칠삼을 단순 건조, 분쇄한 분말의 경우,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인삼 가루(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의 ‘백삼으로 만든 것’의 ‘가루’에 해당된다면 제1211.20-211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삼칠삼을 추출한 ‘추출물(extract) 가루’에 해당된다면 백삼의 경우 제1302.19-112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302호 해설서에서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입 / 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신고필증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세관 수입통관 시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란에서 신고일자 또는 신고번호를 입력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출력(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전자교부시행에 따라 수출입신고필증은 신고인이 출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신고인)에 의해 등록된 화주에 한해 수출입신고필증 출력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필증은 화주가 사업자일 경우에만 출력 가능하고, 개인은 출력이 불가해 화주교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통관 대행 관세사무소에 필증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통관 / 무선이어폰 통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무선이어폰을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품 1개만 구매한다면 「전파법」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main.do) > [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042-714-7535)

또한 분류된 품목번호로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이 확인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 ①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 ②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5258, 5252(3과)
- ③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 담당)

특송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과 관련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개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 한·EU FTA 협정관세

독일로 식품을 수출할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 운송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FDA는 한·EU FTA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유럽 측 관련 당국에서 안내 받기 바랍니다.

대마 성분(CBD)이 함유된 사료용 물품 통관보류와 관련된 행정 절차 처분성

- 조세심판원 조심2024관0006(2024. 6. 27) 사건 중심으로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처분경위

청구법인은 2023. 8. 24. 해외수출자로부터 애니비디올(Anibidiol) 2.5 Relax와 애니비디올(Anibidiol) 8 Plus(쟁점물품)을 HSK 제2309.10-1000호(개사료)로 수입신고했다. 처분청은 수입 신고를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마약류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돼 2023. 8. 25.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리전 분석을 의뢰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CBD가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2023. 9. 5. 청구법인에게 CBD 수입을 위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처분청은 2023. 9.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CBD가 함유된 사료의 통관 허용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식약처장은 CBD는 대마유래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하므로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식약처장의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3. 9. 25. 통관을 보류하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쟁점물품이 장치된 B 주식회사(이하 ‘쟁점장치장’이라 한다)는 2023. 10. 23. 쟁점물품 장치기간 경과가 임박함에 따라 반출통고(이하 ‘쟁점반출통고’라 하고, 쟁점보완요구, 쟁점통관보류 및 쟁점반출통고를 합해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해 2023. 10. 2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반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위원회는 조세심판원으로 이송했다.

II.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행정절차법」과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에서는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보완요구 시 청구법인에게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어딘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반출통고에서도 처분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 안내가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완요구 기한 경과로 자동으로 통관보류가 됐다는 의견이나, 수입신고 보류처분 또는 수입신고 각하 처분을 문서 형태로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관세법」 제237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 기한 경과로 자동으로 통관보류됐다고 구두 응답한 것은 「관세법」에서 정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에서 정한 공고를 불이행했다.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2) 쟁점물품은 마약류가 아니다.

(가) 쟁점물품은 사료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사료관리법」이 적용돼야 하며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서 거래품명란에 ‘PET FOOD’라고 기재돼 있다. 결국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관해 판단을 혼동한 것이므로 「약사법」에 따른 수입통관 요건 승인서 요구는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 규정에서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쟁점물품은 종자로부터 추출된 헵프씨드오일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마약류와 제외물품을 혼동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수입통관 요건 허가서를 보완요구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

(3) 처분청이 반출통고 내용처럼 구매 또는 반송을 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반출통고는 집행정지대상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햄프씨드오일로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인 판매사를 두고 있다. 반출통고 처분은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므로 거래선 관계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 실추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구매를 할 경우 경쟁사가 이를 구매한 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쟁사들이 햄프씨드오일로 제조한 사료를 수입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통관보류 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되더라도 시장가격 교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송할 경우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는 수출자가 국내 여건상 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청구법인과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관계에서 신용이 실추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쟁점반출통고는 단순히 장치기간이 경과했음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매각을 위한 전제 요건이다. 즉 처분청은 쟁점반출통고를 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없다. 쟁점반출통고를 받은 청구법인은 ① 통고일로부터 1개월 기간이 기산돼, ② 보완요구 처분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③ 수입이나 반송을 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강제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해당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보완요구 처분과 통관보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반송은 화주 스스로 판단 및 필요성에 의해서 할 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매각보류가 승인됐으므로 긴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을 뿐, 반출통고 처분으로 매각처분될 경우의 법적 상태까지 정지된 것은 아니다. 즉 보류는 처분 효력은 일단 발생했으나, 직접 실행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청 내부적으로 유보된 사실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처분 효력까지 정지시키지 않는다.

또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4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언제든지 처분에 나아갈 수 있고, ② 4개월이라는 기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의 당부를 판단을 받을 때까지 처분이 보류되지도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에 적용돼야 할 법률은 「행정절차법」이 아닌 「관세법」이다.

청구법인은 통관보류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의 통지 혹은 안내 등을 각각 나열하고 이들 행위를 모두 처분이라고 칭하며, 각 행위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각 행위 또한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2) 쟁점처분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5조 제1항에서는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 격 결정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인 대마가 함유된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입 시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물품이고, 이에 따라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제226조 및 제245조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를 했으나 청구법인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것으로, 처분청의 통관보류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보완요구 통보 및 통관보류 통지가 종이문서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물품 수입신고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업무를 대행한 신고인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신고됐고, 처분청의 보완요구나 통관보류 통지 또한 신고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

「관세법」 제327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시스템(UNI-PASS)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UNI-PASS를 통해 전자신고하고 있다.

「관세법」 제327조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고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UNI-PASS를 통해 수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했으나,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었다. 그래서 처분청은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요구를 했으나,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통관보류 통지를 전자송달했다.

(다) 청구법인은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처분 당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자 하는 자가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처분 자체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 3631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통관을 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은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는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해당 고시에서 정한 바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기도 했던 바, 쟁점물품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해당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마가 함유된 물품으로,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에서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제조·매매를 금하고 있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CBD 함량에 차이가 있는데, 현품에 표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Anibidiol 2.5 Relax’의 CBD 함량은 500mg/kg, ‘Anibidiol 8 Plus’의 CBD 함량은 1,600mg/kg이다. 대마는 THC(Tetrahydro Cannabidiol) 성분과 CBD(Cannabidi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마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대마를 정의하면서 가목에 ‘대마초와 그 수지’, 나목에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물품’, 다목에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목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을 별표 7의2에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마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HC, CBD 두 성분 모두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 성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마로부터 얻은 물품 또는 화학적 합성품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마씨유로 조제한 물품이고, 대마씨유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이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대마를 정의하면서 단서에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대마 종자로 제조한 쟁점물품의 통관은 허용돼야 한다고 하나, 대마씨유라고 해서 무조건 수입·매매 등의 취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하면서 CBD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기준 중 대마씨유에 대한 기준 ●

- | |
|--|
| <p>10)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및 칸나비디올(CBD) 기준</p> <p>(1) 삼(대마)씨앗 : THC 5mg/kg 이하, CBD 10mg/kg 이하</p> <p>(2) 삼(대마)씨유 : 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p> |
|--|

쟁점물품이 비록 동물용이라고 하더라도 CBD가 500 ~ 1600mg/kg까지 함유돼 대마씨유에 대한 CBD 허용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물품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에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에 따라 대마씨유의 THC 함량이 10mg/kg 이하여야 하고, CBD 함량에 대한 허용치는 별표 4의 제36호에서 단미사료·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CBD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처분청이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식약처장은 CBD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 범위에 포함되는 물질로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마약정책과-16281)했다.

(4) 쟁점반출통고는 집행정지 대상 처분이 아니다.

(가) 반출통고의 근거 및 경위

「관세법」 제20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법 제209조 제1항에 따라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통고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장치된 쟁점장치장은 자유무역지역이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제177조 제1항 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인 쟁점장치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장치기간을 알리고, 장치기간 경과 전에 해야 할 조치사항 및 장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의 상황에 대해 통지한 것이다.

(나) 반출통고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쟁점반출통고는 보관업자가 쟁점물품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 장치기간 경과가 임박했음을 화주에게 미리 알리고,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장치된 화물의 처리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사실상 통지에 해당한다. 즉, 쟁점물품의 장치기간, 장치기간 경과 시 쟁점물품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반출통고에 의해 장치기간이 결정됐다거나 물품 반출의무가 변동됐다거나 새롭게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출통고가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반출통고 위법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 반출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하면서 쟁점물품이 매각처분 대상으로 지정돼 공매되거나,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반송하게 될 경우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통고는 단순 통지일 뿐이고, 반출통고만으로 곧바로 처분청이 물품을 매각하거나 반송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 반송은 청구법인이 스스로의 판단 및 필요성에 의해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송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4. 2. 21. 쟁점물품에 대해 체화 매각처분 보류 신청을 했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쟁점물품은 2024. 6. 20.까지 매각처분이 보류된 상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매각처분 혹은 처분청에 의한 임의적인 반송과 같은 상황의 발생은 청구법인의 억측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은 법률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III. 쟁점사항

- ① 서류 보완요구 및 반출통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 쟁점처분(통관보류 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쟁점물품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수입통관 보류 대상인지 여부
- ④ 반출통고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

IV.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쟁점 ①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세관장 등 행정청이 법령에 기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 9. 5.에 한 쟁점보완요구와 2023. 10. 23.에 한 쟁점반출통고가 「행정절차법」 내지 「관세법」에서 정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226조 및 제237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만 했을 뿐 매각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의 쟁점보완요구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법」 제177조 및 제20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물품의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반출통고로 인해 쟁점물품 장치기간이 결정됐거나 반출의무가 변동 또는 새롭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반출통고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 중 쟁점보완요구와 쟁점반출통고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 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다만 쟁점통관보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통관보류 통지서에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CBD가 함유된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관세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UNI-PASS를 통해 수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법 제327조 제3항에 따라 통관보류 통지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인 점, 제226조 제2항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미리 공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사료로 마약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물품 분석 결과, CBD 함량이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질의한 결과 식약처장은 CBD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 범위에 포함되는 물질로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점물품을 「마약

류관리법」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이라고 봐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공매 또는 반송을 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쟁점반출통고가 집행정지 대상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번 안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판결 등), 쟁점반출통고는 쟁점 ① 심리에서 밝혔듯이 「관세법」 제119조 규정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본안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반출통고에 대한 청구법인의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검토 의견

이번 조세심판원 사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대마종자로부터 추출된 햄프씨드오일로 제조된 쟁점물품이 수입통관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실체적 사항)이고 둘째는 통관보류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처분성을 가졌는지 여부(절차적 사항)다. 쟁점물품이 첫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 청구법인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관보류할 명분이 없어 둘째 요건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둘째 요건인 절차적 하자를 따질 실익도 크게 없다. 대상 사건에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쟁점물품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관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실체적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우선 살펴본다.

1. 쟁점물품이 마약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실체적 사항)

대마는 칸나비스(Cannabis)속 일년생 식물로서 3개의 종(*Cannabis sativa*, *Cannabis indica*, *Cannabis ruderalis*)을 포함하는 식물 속명(genus name)으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재배돼 왔다.¹⁾ 대마는 약 200년 전까지 진통제로 쓰였다.²⁾

1) 대마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던 시기는 기원전 1만 2,000년 전이다. 중앙아시아의 알타이산맥 근처에서 성인 남성 시신과 함께 대마가 발견됐다. <코스모스>로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 칼 세이건은 인간이 농경을 시작한 것은 식량 때문이 아니라 마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농사를 위해 사람들이 대마를 들고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퍼트렸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한의학에서는 대마씨앗을 '마인'(麻仁) 또는 '마자인'(麻子仁)이라 부르며 한약재로 처방한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는 대마씨앗으로 쑨 죽은 식욕을 올리고 피로를 풀어주며 생리불순과 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실려 있다.

기원전 중국, 인도 등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잎을 말려 태우는 대마초를 만들었고, 19세기 중반 유럽으로 전파됐다. 이후 효과가 좋은 진통제가 출시되면서 진통제로서의 수요는 줄었고, 환각을 즐기기 위한 ‘기호형 흡연’이 늘어났다. 이때부터 중독과 환각작용 등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대마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환각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마초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대마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기호용 대마에 대해서 2013년 우루과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했고 이어 2018년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는데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었다. 2022년 6월 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됐고, 2022년 8월 스위스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수출까지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D.C와 10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이유는 대마가 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불법 거래와 사용이 워낙 많아 차라리 대마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음성적인 유통과 저품질 대마 유통을 억제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대마 유통 수익의 범죄 자금화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³⁾

대마는 THC 함량을 기준으로 크게 마리화나(marihuana)와 헴프(hemp)로 구분된다. 대마는 80개 이상의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성분은 THC와 CBD다. 마리화나는 THC 함량이 높은 반면, 헴프는 THC 함량이 0.3% 미만으로 적고 유용성분인 CBD 함량이 높다. WHO(2017)에 따르면 CBD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다. WHO 약물중독전문가위원회에서는 CBD를 중독물질로 분류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⁴⁾ WHO는 CBD가 향정신성 마약 특성을 갖고 있지 않고, 남용이나 중독성이 낮아 국제마약통제에서 제외하도록 UN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2020. 12. 2. 제63차 UN마약위원회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 IV)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헴프는 미국, 캐나다, 유럽을 중심으로 재배·가공이 합법화돼 산업적으로 매우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헴프씨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헴프씨드에는 법적 규제 대상인 대마초와 달리 THC 환각성분이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씨앗 껍질을 벗겨내 환각 성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헴프씨드는 불포화지방산과 아미노산·비타민 등이 풍부한 곡물로 알려지면서 대마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해 오일, 캡슐 등으로 가공·판매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헴프씨드를

3) 김병수, ‘대마의 정신의학적 영향’, <생물치료정신의학> 제25권 제3호, 2019.

4) 신정규, ‘독일의 대마, 헴프, CBD에 대한 법제 및 CBD 수출입요건과 그 시사점’, <법과 정책>, 제28집, 제3호, 2022. p 93. 신정규 교수는 향정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CBD 및 그 조제물에 대한 광범위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내지 제한은 이제 규제 강도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린이 과자와 노인 간식에 첨가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주간지 <타임>은 햄프씨드를 6대 슈퍼 곡물로 선정하기도 했다.⁵⁾

THC는 환각을 비롯한 다양한 효과를 일으킨다. 다른 카나비노이드들도 각각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THC 효과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같은 성분도 용량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THC는 낮은 용량에서는 항불안 효과를 보이거나 높은 용량에서는 불안을 유발한다. THC와 CBD는 모두 21개의 탄소 원자, 30개의 수소 원자 및 2개의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어 정확히 분자 구조가 같다. 하지만 원자 배열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CBD와 THC는 모두 신체의 엔도 카나비노이드와 화학적으로 유사해 이를 통해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일부 연예인들의 주도로 대마초 흡연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마초 흡연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가 술, 담배에 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범죄화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마의 내성과 의존성 때문에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마 사용자가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등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⁶⁾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대마의 흡연과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적 위험성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방법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⁷⁾

대마가 가지고 있는 THC라는 물질 때문에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 등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THC는 대마를 원료로 하는 물질의 법률적 금지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THC 외에 CBD 함량도 마약을 분류하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마씨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유형 중 「기타의 식물성유지」에 해당된다. 식약처에서 2015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대마씨앗은 THC 5mg/kg 이하, CBD 10mg/kg 이하로 대마씨유는 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로 규정했다.

5)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참조(‘영양 풍부 슈퍼 곡물…대마 씨앗, 햄프씨드’) 2020. 6. 23.

6) 대마초의 환각 효과가 더 강력하고 유해한 마약이나 환각물질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마초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관문이론(gateway theory)’이다. 그러나 마이클린스키 박사는 2003년 AMA(미국의약협회)의 저널에서 “대마초의 사용이 오히려 다른 마약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관문이론을 반박했다.

7)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9헌바246 전원재판부

쟁점물품 현품에는 ‘Anibidiol 2.5 Relax’의 CBD 함량은 500mg/kg, ‘Anibidiol 8 Plus’의 CBD 함량은 1,600mg/kg으로 표기돼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마가 함유된 물품에 해당된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에서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을 금하고 있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술연구, 공무상 필요, 의약품 제조 등 특정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동물사료용으로 반입한 점에 특정한 목적 수행과는 거리가 있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수입통관이 어려운 물품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거래품명란에 ‘PET FOOD’라고 기재돼 있고 실제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으로 분류되는 이상, 그 용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2. 통관보류 등의 처분성 여부(절차적 사항)

쟁점물품이 마약류로 분류된 이상 이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2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식약처장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식약처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같은 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했고 청구법인은 보완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자 세관장은 제2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를 UNI-PASS를 통해 통지했다. 쟁점물품을 보관 중인 자유무역지역 장치장에서도 장치기간이 경과돼 청구법인에게 수입통관, 반송, 폐기 등을 통해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 달라는 요지의 반출통고를 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장치장에서 반출통고를 했음에도 화주가 반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매각처분 보류 신청을 했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쟁점물품은 매각처분이 보류된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살펴볼 때 세관장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절차는 통관의 적정성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장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불복대상요건인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화주에게 매각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하거나 매각 후 국고귀속을 통보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을 세관장에게 하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했을 때에는 비로소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통관보류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되더라도 시장가격 교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또한 처분청이 반송할 경우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는 수출자가 국내 여건상 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청구법인과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관계에서 신용이 실추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마약류관리법」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수입통관을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관계기관에 사전질의를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 각국이 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마초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조제물질에 대한 합법화 여부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다. 대마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마약 규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없이 단지 실제로 많은 경쟁사들이 햄프씨드오일로 제조한 사료를 수입해 시장에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수입통관이 될 것이라고 오인한 부분은 전적으로 규정 미숙지에 따른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⁸⁾ 햄프씨드를 원료로 한 조제물품은 CBD 함유량이 20mg/kg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통관요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 통관보류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 세관장에게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보류에 따른 청구법인의 신용 하락과 청구법인에게 발생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세관장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는 오롯이 수입 전에 통관요건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청구법인이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번 사건은 통관보류에 대한 절차적 하자보다는 통관보류를 하게 된 원인, 즉 청구법인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여부가 관건이다. 통관보류에 대한 적법성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여전히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VI. 맺는 말

한국의 마약사범 수는 1999년 1만 589명으로 처음 만 명을 넘어선 후 2014년까지 증감을 반복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9년에는 1만 6,044명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만 8,395명에 달했다. 2023년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⁹⁾ 마약범죄는 드러난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일반적으로 마약암수

8) 대법원은 납세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9) 대검찰청, <2023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율¹⁰⁾은 20이지만 한국에서는 암수율을 28.57로 사용하고 있다. 2023년 검거된 마약사범 2만 7,611명에 28.57을 곱하면 78만 8,84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가 넘는 수준이다.¹¹⁾

태국의 대마 합법화는 대마초 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대마 남용과 더불어 청소년의 대마 중독 문제 등으로 대마초 사용이 다시 불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024. 5. 8. 태국 세타 타워신 총리가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마초 흡인에 따른 정신적 효과로 도파민 분비에 따른 평온함과 행복감, 스트레스 해소, 진통 효과, 감각증폭 등을 경험하지만 결국 증폭된 감각으로 인해 환각과 공포심이 나타나거나, 일상의 단편적인 단기 기억력과 작동 기억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마의 두 가지 주성분은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THC와 향정신성 작용이 없다고 알려진 CBD가 있다. CBD 효능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활용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CBD에서 추출한 오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출시하고 있다.¹²⁾ 이외에도 CBD를 첨가한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 맥주, 스낵 등 식품 분야에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THC 성분을 넣은 젤리가 국내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젤리류가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마젤리가 위험한 것은 소비자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고, 실제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한 성분을 젤리에 넣어 중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한국소비자원은 대마씨 껍질에는 환각성분이 함유돼 있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과정에서 최종 제품에 잔류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국내 판매 중인 대마씨유 70종의 판매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마씨유(헴프씨드오일)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¹³⁾ 조사 당시 국내 수입·제조 158개, 해외 직구 39개 총 197개 제품이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홈쇼핑 판매 상위 20개 제품을 선정해 대마 성분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 성분(25.4mg/kg)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했다.

10) ‘암수범죄란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다. 주로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마약범죄와 같이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에 많다.

11) 박성수·백민석,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9. p 151.

12) 매경헬스, ‘환각없는 대마성분 CBD, 의료용 빼곤 불법?’ 2020. 8. 5.

13) 한국소비자원에서 EU에서도 2020~2022년 대마씨유 및 관련 식품에서 72건의 환각성분 기준을 초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상 햄프씨유에서 추출된 CBD 함량이 20mg/kg 초과되면 마약류로 분류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록 동물사료용으로 수입했다 하더라도 CBD 함량이 20mg/kg 초과된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에 해당되므로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장의 승인 없으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통관보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에 따른 엄격한 통관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통관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THC와 CBD 제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국내에서 2018년 「마약류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고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항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 제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CBD 경우에도 수입은 허용하되 해당 제품이 대마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수입자로 하여금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세계 각국의 CBD 인식과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56개국에서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CBD 관련 시장이 2030년 약 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⁵⁾ CBD 허용기준치에 대해 현행과 같이 계속 존속할지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 나아가 사람이 섭취하지 않는다면 용도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¹⁶⁾

14) 한국바이오협회,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동향' 보고서, 2022. 4. 4.

15) 경상북도 안동시가 '의료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바이오 산업단지에서 햄프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및 실증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16) 사료용, 화장품용 등을 식용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전환하는지는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8402호[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해설 요지]

제8402호는 크게 (I)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II)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의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은 다시 (A)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B) 스펙트럼 분석기, (C)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A)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소그룹의 기기는 전압, 전류와 같은 전기적 양(量)을 시간 간격(대역)별로 변화를 관측하거나 기록하는 기기로 TFT-LCD를 장착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주로 사용된다.
- (B)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 소그룹의 기기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신호전력 세기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장비로 통신 관련 산업에서 필수인 측정기기 중 하나다.
- (C) 소그룹의 기기에는 ① 논리분석기, ② 피폭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브리지, ③ 멀티미터, ④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측정·검사기 등이 포함된다.

(II) 그룹에는 ① X선, 감마선, 알파입자, 베타입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이온화 방사선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이온화 챔버(ionization chamber)를 갖춘 검출장치, ② 핸디형 방사능 측정 장비인 가이거 계수기(Geiger counter), ③ 방사선 측정 계수관의 일종인 섬광 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 ④ 외부 전리 방사선의 선량 흡수를 측정하는 방사선 선량계(dosimeter), ⑤ 우주선(cosmic radiation)이나 이와 유사한 방사선 측정용 기기, ⑥ 중성자 검출기와 중성자 검출기용의관이 결합된 측정이나 검출용 기기(thermopile), ⑦ 액체나 고체 섬광체가 결합된 방사선 검사기나 검출기 등이 포함된다.

소호 체계는 ① (II)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그룹을 하나의 특정 소호로 규정하고, (I) 그룹의 기기를 ② 오실로스코프, ③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④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 ⑤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중심으로 특정 소호로 세분화했다(총 11개 소호로 구성).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 품목에는 이온화 챔버, 가이거 계수기, 섬광 계수기, 디지털 방사선선량계,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 논리 분석기, 다목적 전기량 측정기, 휴대용 주파수 측정기, 다목적 주파수 시험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멀티미터(Multimeter)는 저항, 전압, 전류 등의 기본적인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소호의 변화가 많았던 물품이다. 기록장치 유무와 상관없이 제8402.31호와 제8402.32호를 묶어 ‘멀티미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402.3호로 제정돼 있는 회로계, 주파수 측정기, 검류계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HS 2002 버전 이후 소호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기에 맞게 HSK를 바르게 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신호전력 세기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장비로 제8402.40호로 분류되며, 제9027호에 분류되는 분광계(spectrometer) 그룹의 기기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8402.82호의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란 제85류 주 제12호에 규정한 제8541호의 ‘1) 반도체 디바이스,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와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의 측정·검사용 기기’를 말한다.

제9022호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엑스선관,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엑스선이나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눈금이 매겨진 경우에도 제8402호로 분류한다.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측정기기로 저항 측정용 기기, 방사능 계산계, 열전쌍(열전대, thermocouple) 기기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지구물리학용 기기로 사용되더라도 제9015호의 지구물리학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제8402호로 분류한다.

전기의 적산용 계기는 소비전기량 및 소비전력량의 측정 기기로 제9028호로 분류하며, 전압계·전류계·전력계 등의 기기와 같이 단순히 전기량만 측정하고 소비전기량이나 소비전력량의 총량을 적산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8402호로 분류한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8402호는 크게 (I)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II)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의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그룹의 전기적 양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기와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검사용 기기를 포함하므로 이 호로 분류한다. 또한 (II) 그룹의 전리선(Ionizing Radiations)을 검사하거나 검출하는 기기는 핵 방사선을 포함한 이온화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들로, 원자 또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분리해 이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아원자 입자 또는 전자파를 측정·검사한다. 이온화 방사선에는 전자기 스펙트럼 중 감마선, X선, 고에너지 자외선이 있고 대표적인 이온화 아원자로는 알파입자, 베타입자, 중성자가 있다. 또한 우주선으로는 뮤온, 중간자, 양전자 등이 있다.

(I)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은 다시 (A)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B) 스펙트럼 분석기, (C)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소그룹의 기기는 전압, 전류와 같은 전기적 양(量)을 시간 간격(대역)별로 변화를 관측하거나 기록하는 데 사용한다. 보통 사용자가 눈으로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전기량에 따른 파형 눈금이 표시돼 있다. 파형으로 전압의 최소·최대치, 주기적 신호의 빈도, 펄스 간의 시간, 관련 신호 간의 시차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멀티미터가 전압·전류·저항 등 특징적 신호의 크기만 표시하는 것에 반해, 오실로스코프는 신호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신호 모양을 표시하므로 구별된다. 오실로스코프는 전자공학의 핵심 장비로 주로 과학, 의학, 엔지니어링, 통신산업 등에서 중요한 측정기기로 사용된다.

더텔(Duddell)의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연철형(soft iron type)과 조각형(graver type) 오실로그래프, 음극선관 오실로스코프(cathode-ray oscilloscope), TFT-LCD(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오실로스코프 등의 종류가 있으나 현재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컴퓨터의 발달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보여주는 TFT-LCD를 장착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주로 사용된다.

(B)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 소그룹의 기기는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전력 세기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장비다. 누설주파수, 전파 감시, 도청 탐색과 같은 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통신 관련 산업에서 필수적인 측정기기 중 하나다. 전기적 입력신호를 주파수 정보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전기적 양의 변화를 보여주는 오실로스코프와 구별된다. 또한 전파천문학에서 전파관측 데이터를 분광해 분광선의 강도 분석 등과 같이 전리선·음파와 그 밖의 비전기적 양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C)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소그룹(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은 지시식(indicating)이나 기록식(recording)이 있으며, 작동 양식에 따라 코일형·철편형·유도형·열전대형·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작동형 등이 있다. 전기적 양 측정에는 전류·전압·저항·전도율·전력·정전용량과 인덕턴스, 주파수, 자기장이나 무선주파수, 위상각이나 역률, 두 전기량 간의 비율, 자체나 자속, 재료의 전기적 특성, 동기(synchronism)의 검정,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적 양의 기록과 측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소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① 전자회로의 정지 상태에서 동작 상태로, 동작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급격한 변환 시 발생하는 현상을 기록하는 기기로 신호를 포착·기록해 적당한 형태로 표시장치(예 : 모니터)에 전송되도록 설계된 트랜센트 분석기, 반도체 장치의 다수 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논리 분석기(logical analyser)가 있다.
- ②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예 : 측정용 브리지(measuring bridge)와 전위차계(potentiometer). 브리지는 일반적으로 한 개나 여러 개의 검류계·표준저항기·표준축전기·표준 유도기·표준전지·변압기·변환기·스위치 등을 박스나 케이스에 장치시킨 기기로 톨신브리지, 앤더슨 브리지, 유니버설 브리지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 ③ 전기식이나 전자식 기기로서 전압, 전류, 저항과 정전용량을 빠르게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다목적 용의 '유니버설 테스터[(universal tester) 예 : 멀티미터]가 있다.
- ④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 여기에는 누화계, 노이즈레벨미터, 게인측정계, 간섭측정계, 잡음전압계, 피크지시계, 반향계, 만곡률 측정기기 등이 포함된다. 어떤 기기는 전기음향 측정 시 네퍼(neper)나 데시벨(decibel)로 검정한다.
- ⑤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검사용 기기에는 이 호에 기술된 종류의 작동을 행하는 그 밖의 기기를 포함하며, 진공관의 시험용이나 측정용의 기기(특히 무선용 진공관의 시험용의 것)를 포함한다.

(II)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들은 핵 방사선을 포함한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온화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기기들이다. 이러한 기기들은 방사선 조사나 방사선 오염 확인, 원자력 산업, 연기 감지, 의료방사선 측정과 같은 분야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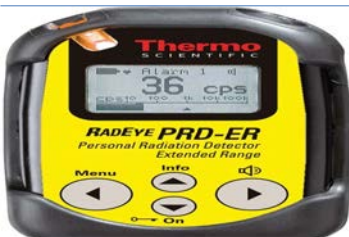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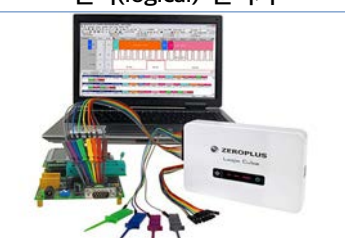
- (1) 이온화 챔버(ionization chamber, 전리조)를 갖춘 검출 장치 : 가장 간단한 유형의 기체 이온화 검출기로 X선, 감마선, 알파입자, 베타입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이온화 방사선을 검출하고 측정하므로 원자력 산업, 화재 감지, 방사선 보호 및 환경 모니터링에 널리 사용된다. 양극과 음극 두 개의 전극이 있는 가스로 채워진 챔버로 구성되며, 입사 방사선으로 인해 가스 내에서 생성된 이온쌍의 수로 전하를 측정하며 이때 발생하는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의 변화를 증폭시켜 측정한다.
- (2) 가이거 계수기(Geiger counter) : '가이거-뮐러 계수기'라고도 한다.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 널리 사용되는 방사능 측정 장비다. 불활성 기체를 담은 가이거-뮐러 계수관을 이용해 알파입자, 베타입자, 감마선과 같은 방사능에 의해 불활성 기체가 이온화되는 정보를 표시해 방사능을 측정한다. 계측치의 표시 방식으로는 지침이나 소리를 이용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TFT-LCD 표시장치와 결합한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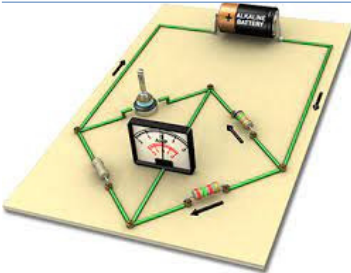
방식이 있다.

- (3) 섬광 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 : 방사선 측정 계수관의 일종이다. 보통 입사 방사선에 반응해 광자를 생성하는 섬광 물질과 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검출기(예 : Multiplier Tube, Charge coupled Device, Camera, Photodiode), 신호처리장치로 구성돼 있다. 효율이 우수하고 저렴하게 제작 가능하며 입사 방사선의 강도와 에너지를 모두 측정할 수 있어 방사선 보호, 방사선 물질 분석, 물리학 연구 등에 널리 사용된다.
- (4)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로는 ① 외부 전리 방사선의 선량 흡수를 측정하는 방사선 선량계(dosimeter)와 이와 유사한 엑스선의 강도(intensity)와 투과력(penetrating power)의 측정용이나 시험용 방사선 기기, ② 우주선(cosmic radiation)이나 이와 유사한 방사선의 측정용 기기, ③ 중성자 검출기와 중성자 검출기 용의관이 결합된 측정이나 검출용 기기(thermopile), ④ 액체나 고체 섬광체가 결합된 방사선 검사기나 검출기 등이 있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이온화 챔버, 가이거 계수기, 섬광 계수기, 디지털 방사선선량계,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 논리 분석기, 다목적 전기량 측정기, 휴대용 주파수 측정기, 다목적 주파수 시험기 등이 있다.

■ 제8402호의 다양한 기기와 관련 물품

이온화 챔버(전리조) 	가이거 계수기 	섬광 계수기 
방사선선량계(dosimeter) 	휴대용 디지털 방사선선량계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스펙트럼(spectrum) 분석기 	과도(transient)현상 기록기 	논리(logical) 분석기 

Wheatstone 브리지회로 	Anderson 브리지회로 <i>Andersons Bridge</i> 	Kohlrausch 브리지회로 
디지털 전위차계 회로 	만능 브리지 	Sauty 브리지회로 <i>DE-SAUTY BRIDGE TRAINER</i> 
직류전류계(바늘 지시식) 	전압계(바늘 지시식) 	인덕턴스 측정기 
전력 측정계 	동기 검정기 	디지털 멀티미터 <i>AB30L</i> 
다목적 전기량 측정기 	휴대용 주파수 측정기 <i>Spencer comar</i> 	주파수 측정 검사기 

■ 제8402 소호의 구성

제8402호는 호의 용어에 규정한 ① 증기발생보일러 그룹과 ② 과열수보일러를 특정 소호로 규정했다. 거래량이 많은 증기발생보일러 그룹은 다시 증기 발생량과 종류를 기준으로 6단위를 세 개의 소호로 세분화했다. 마지막으로 ③ 부분품은 소호에 규정한 총 5개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제8402.1호 - 증기발생보일러
 제8402.11호 - 증기 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 보일러
 제8402.12호 - 증기 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 보일러
 제8402.19호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 보일러를 포함한다)
 제8402.20호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제8402.90호 - 부분품

■ 제8402호 HSK의 구성

HSK는 소호의 용어를 그대로 제정하거나 소호의 용어를 세세분화했다. 다만 제8402.3 소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로계, 주파수 측정기, 검류계의 HSK 제정 문제점은 ‘Ⅲ. 주요 쟁점사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 규정

제8402호의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4호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 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5호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 제84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 (1) 제8401호에는 원자로·방사선을 조사(照射: irradiate)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분리용의 기기를 분류한다.
- (2) 제8402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 (3) 제8425호부터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 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이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계와 기계식 기구를 분류한다.

■ 제8402호 해설서

(A) 증기발생보일러

이 그룹에는 증기(예: 수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원동기(예: 증기터빈)나 그 밖의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예: 증기해머와 펌프)를 구동하거나 가열용·조리용·소독용 등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해당되며, 중앙난방용의 증기발생보일러도 포함한다.

어떤 특정한 기계·장치나 차량의 전용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 명백한 보일러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제시된 것(예: 기관차용 보일러)은 이 호에 분류한다.

증기발생보일러(steam boiler)는 고체연료·액체연료나 기체연료에 의하여 가열되거나 전기로 가열될 수 있다.

연료연소보일러(fuel-burning boiler)로부터 열효율을 향상하거나 증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구조

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보일러가 생산되었으며, 그 주된 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1) 연관(煙管)보일러(firetube boiler, 예 : 기관차용 보일러) : 보일러의 동체 내에는 연소가스가 통과 되는 연관이 가로질러져 있다.
- (2) 수관(水管)보일러(watertube boiler) : 이 형의 보일러는 여러 개의 수관(watertub)이 연소가스로 둘러 싸여져 있고 ; 어떤 것은 그 내벽이 수관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 (3) 혼성보일러(hybrid boiler)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의 (1)형과 (2)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어떤 보일러에 있어서 관(管 : tube)의 시스템은 한 개 이상의 원통형 동체에 콜렉터(collector)로 연결 되어 있으며, 이 원통형 동체는 보일러수를 저장해 주거나 보일러수와 증기를 분리시켜준다. 그 밖의 보일러 중 강제순환 보일러로 알려진 것은 흔히 증발 드럼이 없고 보일러의 순환은 펌프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보일러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소형 보일러는 보통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의 외판(shell) 속에 수용하거나 동상(同床 : common base)에 장착시켜 조립한 상태로 제시하며, 대형보일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외판이나 벽돌 구조물 속에 다수의 개별 부품을 취급 현장에서 조립작업을 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B)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 보일러수를 매우 높은 압력으로 공급하여 그 정상적인 기화 온도를 훨씬 초과하는 온도(보통 섭씨 180도 정도나 그 이상)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된 보일러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위의 (A)에 기재한 보일러와 매우 유사하다. 그 작동에 필요한 압력은, 예를 들면, 증발 드럼에 증기를 축적함으로써 얻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활성가스(inert gas : 일반적으로 질소)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보일러의 내부에서 생성된 과열수는 언제나 가압 하에 유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일러에서 나와서 그 보일러로 되돌아가면서 밀폐관로를 순환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 공장설비[예를 들면, 자동차의 차체의 페인트건조용 터널노(爐)]나 군집한 빌딩이나 지역난방시설의 대집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지점에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열은 과열수[일차유체(一次流體 : primary fluid)]가 이러한 지역의 시설을 가열하는 이차유체(secondary fluid)에 그 열량을 전달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통하여 공급된다.

이 호의 보일러는 그 출력이나 효율을 증대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범위한 부속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기에에는 제8404호에 해당하는 연료절약기(economiser)·공기에열기(豫熱器 : air pre-heater)·과열기(super-heater)·과열저감기(de-super-heater)·수증기(受蒸器 : steam receiver)·증기비축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 watertube fire-box wall)이나 그 밖의 기기와 제8421호의 급수용 청정기·탈기기(de-aerator)·탈가스기(de-gasifier)와 연수기(軟水器 : softener)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속기기는 보일러와 함께 제시하여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 구조로 되어 있거나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보일러에 분류하고 ;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또한 보일러와 함께 제시된 불판(grate)이 전체로서 보일러와 일체 구조가 되도록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보일러와 함께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보일러와 결합되어 있는 불판과 벽돌 구조물에 의하여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된 불판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 호에서는 단순히 물을 정상의 기화점(vaporisation point)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제작된 보일러와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저압의 증기발생이 가능한 것일지라도 제외한다(제840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부분품,

예를 들면, 보일러의 동체(body)와 베이스(base)·보일러의 내부 조립물[관(tube)의 조립체로 구성된 것]·수관용 캡(cap)·헤더(header)·보일러 드럼·증기돔(steam dome)·비기계식(non-mechanical) 화실·검사용 커버·가용(可溶)플러그를 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금속으로 만든 튜브(tube)나 관(pipe)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

III. 주요 쟁점사항

제8402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02.32 소호, 제8402.33 소호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 2) 제8402.3 소호로 제정돼 있는 회로계, 주파수 측정기, 검류계의 정의와 문제점은?
- 3) 스펙트럼 분석기의 분류는?
- 4) 제8402.82 소호의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범주는?
- 5) 제9029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1) 제8402.32 소호, 제8402.33 소호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멀티미터(Multimeter)는 저항, 전압, 전류 등의 기본적인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관세율표 소호 개정이 매우 빈번했다.

HS 2002 버전까지 제8402.3호 5단위 소호에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는 제8402.31 소호에 분류하나,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는 이질적으로 제8402.83(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기기) 소호에 분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단위 소호를 그대로 두고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를 제8402.32호에 특정 소호로 규정했으나 통칙 제6호를 위반(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5단위 소호가 선정되고 그 소호 자체가 다시 세분되는 경우에,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만 6단위 소호들의 본문을 고려해 6단위 소호를 결정해야 한다 : 쉽게 말해 5단위 범위 내에서 6단위를 세분화한다) 해 소호를 제정한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HS 2012 버전에 5단위 소호를 개정해 멀티미터 관련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러나 제 8402.82 소호에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중에 전압, 전류, 저항, 전력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와 충돌이 발생(두 소호에 분류 가능)해 HS 2022 버전에 제8402.3호 5단위 소호를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검사용은 제외한다)’로 개정해 현재에 이르렀다.

필자는 멀티미터뿐만 아니라 제8402 소호 제정을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장치의 유무에 따라 구분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 멀티미터는 당연 기록장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8402.31 소호와 제8402.32 소호를 묶어 ‘멀티미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8402.84(기록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 소호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8402호 멀티미터의 소호 변천사 ●

HS 버전	제8402.3 5단위 소호	멀티미터 소호	소호의 용어
2002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제8402.31호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제8402.83호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2007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제8402.31호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제8402.32호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2012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제8402.31호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제8402.32호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2022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검사용은 제외한다)	제8402.31호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제8402.32호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2) 제8402.3 소호로 제정돼 있는 회로계, 주파수 측정기, 검류계의 정의와 문제점은?

제8402.3호 5단위 소호에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검사용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멀티미터에 대한 6단위 소호 제정의 문제점에서 설명했듯이 HSK는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할 수 없다. 이는 마치 하위법이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나 제정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회로계(Circuit testers)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해설서에 없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전기기기, 전자회로 따위의 조정이나 고장 발견을 위한 휴대용 전류 전압계. 하나의 지시침을 사용하여 저항값, 전류, 직류전압, 교류전압 따위를 잴 수 있다”고 돼 있다.

멀티미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단위 소호에 규정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검사용은 제외한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자인 IC는 전기기기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양·불량 품질검사를 위해 IC회로의 단락 검사 등도 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측정기(Frequency measuring apparatus)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교류(AC)의 맥락에서 전기가 1초 동안 양극과 음극 사이를 전환하는 횟수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파수 측정은 제8402.3호 5단위 소호에 규정한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이 아니므로 소호의 범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전기통신에서 말하는 주파수 측정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제8402.40 소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소호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측정기가 전기통신이 아닌 교류의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제8402.89 소호 내에서 제정돼야 타당할 것이다.

제8402.39-2000호 내의 바(-)에 있는 검류계(Galvanometer)는 HS 2017 버전까지 제8402.39-5000호에 제정돼 있었다. 검류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전기회로의 매우 작은 전류, 전압, 전기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돼 있다. 비교적 큰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를 사용하고 매우 작은 전류는 검류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전류계의 일종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류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HS 2002 버전 이후 제8402 소호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기에 맞게 HSK를 바르게 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스펙트럼 분석기의 분류는?

제9027호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 분광계(spectrometer) 그룹을 예시하면서 분광기(spectroscope), 분광사진기(spectrographs), 단색광기(monochromator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는 “물리나 화학분석이 아닌 전기적 입력 신호를 여러 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주는 기기로, 방사선 검출기나 비전기적 양(量)을 검출하거나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그 밖의 장치와 결합되어 주로 전기적 양(量)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그 외 전리선·음파와 그 밖의 비전기적 양(量)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402호로 분류함은 명백하다.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ser)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신호전력 세기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장비다. 누설주파수, 전파 감시, 도청탐색과 같은 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통신 관련 산업에서 필수인 측정기기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제8402.40호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인다.

● 네트워크 분석기의 WCO 분류 사례 ●

결정 세번	제8402.40호
품명	네트워크 분석기
물품 설명	다중 통신규약[이더넷, ATM(비동기 전송 방식), IPv6(인터넷 통신규약 버전 6), VoIP(음성인터넷 통신규약), HSDPA(고속 하향 패킷 접속), UMTS(범용 원거리 이동통신 시스템), CDMA(코드

분할다중접속) 등을 채용하는 네트워크의 동작 상황을 분석하고, 설계 단계 동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통신과 오류 조건들을 시뮬레이트하고 오류 조건들을 검출한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패킷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패킷들에 시간표시 데이터를 추가하며, 관심 대상이 아닌 패킷들을 가려내고, 비트 단위까지의 모든 정보를 체크함으로써 관심 대상이 되는 패킷들을 분석해내며, 한 패킷 또는 연속 패킷의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보(예 : 패킷의 지터, 지체, 버려진 또는 상실된 패킷, 비트 또는 데이터의 오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분석기는 통합 자동자료처리(ADP) 기계, 데이터 취득을 위한 메모리(용량이 512MB 미만인 것), 착탈 가능한 하드 디스크(용량이 120GB 미만인 것) 및 핫스와핑 라인 인터페이스모듈(LIM)을 포함한다. 이 분석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접속할 수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4) 제8402.82 소호의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범주는?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402.82 소호에는 집적회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기기가 포함됨은 명백하다.

반면 제8541호는 크게 (A) 반도체 디바이스,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C)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D)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mounted piezo-electric crystal)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A) 반도체 디바이스, (C)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그룹의 기기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기기가 포함되는 것도 명백하다.

문제가 됐던 것은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의 포함 여부였는데 결론적으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실리콘웨이퍼나 (A)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의 기기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그룹의 기기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검사하는 기기 또한 포함된다.

참고로 (D)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mounted piezo-electric crystal) 그룹의 것은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분류 사례 ●

시행기관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2.82-0000호
경합 세번	제8402.39-9000호, 제8402.82-0000호
품명	태양전지(Solar Cell) Tester
물품 설명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 챔버 내 삽입된 태양전지에 광원(제논플래시)을 조사(照射)하면 각각의 상황(방사 조도, 온도 등)에 따라 태양전지는 이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며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IV-Curve 값으로 출력,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402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8402.3 소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제8402.82 소호에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한편, 제8402.82 소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에 대해 관세를 양허한 품목번호임. 본건 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IV-Curve 값으로 출력,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로, 태양전지를 통해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전압·전류·저항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WTO ITA 협정에서 양허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소자인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2.82-0000호에 분류함.

5) 제8402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제9015호에 ‘지구 물리학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지구 물리학용 기기는 물리적으로 지구를 탐사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측정기기로 저항 측정용 기기, 방사능 계산계, 열전쌍(thermocouple) 기기도 일종의 지구물리학용 기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분류에 있어서는 제8402호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측정기기로 저항 측정용 기기, 방사능 계산계, 열전쌍(thermocouple)기기는 제8402호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에 따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제8402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제9015호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호로 분류되는 조건은 엑스선발생관, 엑스선관, 방사선원과 결합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9022호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엑스선관,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엑스선이나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눈금이 매겨진 경우에도 제8402호로 분류한다.

제9028호에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제9028호 해설에서 언급했지만 전기의 적산용 계기는 소비 전기량의 측정, 소비 전력량의 측정 기기다. 따라서 전압계·전류계·전력계 등의 기기와 같이 단순히 전기량만 측정하고 소비전기량이나 소비전력량의 총량을 적산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해 제8402호로 분류한다.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가 포함되며 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는 측정장치, 전기식조절장치, 기동·정지·조작장치로 구성돼 있다.

측정장치는 조절되는 변량(variable)의 실제 값을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며 열전대(thermocouple) 등이 사용된다. 이 열전대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02호로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카카오 버터 분류 사례

- 2024년도 7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카카오 버터(Cacao butter)는 카카오 매스에서 추출하는 지방질이다. 코코아 버터(Cocoa butter) 또는 카카오 기름(Theobroma oil)이라고도 한다.

○ 추출 방법

카카오빈을 발효하고 건조한다. 빈을 볶고 껍질을 분리하면 카카오넵스가 제작된다. 카카오넵스의 30~50%는 카카오 버터다. 카카오넵스는 분쇄해서 카카오매스로 만든다. 카카오 매스를 압착해서 카카오 버터와 무지방의 카카오 고형물로 분리하는데 여기서 카카오 버터를 뽑고 남은 무지방의 검은 고형물이 우리가 카카오 파우더 혹은 코코아로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코아와 카카오 버터는 카카오에서 얻은 서로 다른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다.

○ 특성

카카오 버터는 가장 안정적인 유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 버터의 녹는점은 34 ~ 38℃로 상온에서 고형 초콜릿의 형태가 유지된다. 카카오 버터에는 천연 산화방지제가 들어 있어 산패 저항성이 뛰어나므로 장기 보존성이 매우 우수한 유지다.

○ 용도

주 용도는 초콜릿(화이트·밀크·다크 초콜릿)의 원료다. 산패에 강하고 부드러운 향과 감촉으로 로션이나 비누 등의 화장품 재료로도 사용된다. 또한 향이 강해서 다른 음식의 강한 맛과 향을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체온에 녹는 점을 이용해 좌약의 베이스로 쓰이기도 한다.

○ 카카오 버터의 대용물과 문제점

카카오 버터는 시중 유통되는 유지 중 비싼 편에 속하므로 준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 버터의 대용물이 제작됐다. 대용물은 보통 코코넛유, 팜유, 대두유 등이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100%의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초콜릿이라는 상품명을 쓰지 못한다. EU에서도 대체 유지 사용을 5%까지만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식품공전에서는 카카오 매스 및 카카오 버터의 함량이 적은 초콜릿을 ‘준초콜릿’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대신 첨가되는 것은 주로 팜유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에서 뽑아내는 물질 중 오직 카카오 버터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화이트 초콜릿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카카오 버터 없이 팜유, 화이트 초콜릿 향만 사용한 경우도 있다(제품 유형을 보면 초콜릿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제과업계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 버터가 들어간 평범한 초콜릿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판되는 국산 초콜릿은 ‘가짜 초콜릿’, ‘저질 초콜릿’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초콜릿 애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 버터와 카카오 매스 모두 좋은 품질을 사용한 제품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유명 해외 초콜릿 브랜드 제품 빼치는 가격이었다. 앞서 언급한 팜유를 사용해 초콜릿의 단가를 낮췄지만, 그럼에도 판매가격은 비싸서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수입판 H사 초콜릿에 카카오 버터가 함유됐으며, 국내 유명제과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는 H사 초콜릿에는 팜유가 들어간다. 극히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 유명제과의 초콜릿에서도 카카오 버터가 함유된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값싼 대용물 때문에 카카오 버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외국에서는 카카오 버터를 다량 함유했다고 고급 초콜릿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해외 상당수의 명품 초콜릿에는 카카오 버터가 함유되지 않거나 미량만 들어갔으며, 대부분 카카오 매스에 설탕만 들어가거나 여기에 카카오 버터만 약간 추가된다.

사실 초콜릿의 품질은 카카오 버터보다는 카카오 매스가 좌우한다. 고품질의 카카오 매스를 사용하면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으며, 애초에 카카오 매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분리하므로 제대로 된 초콜릿에서는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카카오 버터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미황색계 불투명한 고체상의 코코아 버터
- 용도 : 초콜릿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1804.00-0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1804호에는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코코아 버터(cocoa butter)는 코코아두에 함유된 지방 물질로서, 보통 코코아 페이스트(paste)나 원형의 두(whole bean)를 열간압착하여 얻는다. … <중략> … 코코아 버터는 보통 실온(室溫)에서 고체이며 약간 기름 상태로서 황백색이다. 이는 코코아와 유사한 냄새가 나며 유쾌한 향미(香味 : flavour)가 있다. 보통 슬래브(slab) 모양으로 제시하는데 초콜릿 제조[코코아 페이스트(paste)를 강화]·과자의 제조[특정 단과자(sweets)를 조제하기 위하여]·향료[냉침법(冷浸法)에 의한 향료 추출]·화장품류와 의료용품[연고(ointment)·좌약(suppository)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미황색계 불투명한 고체상의 코코아 버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804.00-0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관세율표 제18류에는 ‘코코아와 그 조제품’이 분류된다. ‘코코아 버터’는 식물성 유지이지만 관세율표 제18류 이하 4단위 호(제1804호)에 분류된다.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 분류되는 제15류의 주 규정에서도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은 제15류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유의하자.

- 관세율표 제1804호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관세율표 제15류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 관세율표 제15류 주 제1호 나목
 - 이 류에서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은 제외한다.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호	(제1804호)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HSK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 <중략> ... (제15류 주 제1호 나목)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 제외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1804.00-0000호
품명	Cocoa butter ; Chomax 500
	○ 개요 - 미황색계 불투명한 고체상의 코코아 버터 - 용도 : 초콜릿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 이미지

물품 설명



관자맛 혼합조미료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조미료는 음식 맛을 돋우는 데 쓰이는 양념의 일종이다. 요리에 적당량 넣으면 한층 감칠맛이 나며 이 때문에 미원이나 다시다 같은 조미료는 거의 만능 수준으로 쓰인다.

MSG, 아스파탐 등 인공 합성 조미료에 대해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 간혹 독극물 마냥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조미료를 다량 섭취하면 좋을 것은 없겠으나 현재까지 연구에서 특별한 유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해성이 있다고 해도 조미료를 조금 먹은 정도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관자 추출물 분말(관자, 말토덱스트린, 소금), 소금, 핵산계 조미료 등을 혼합한 미향색계 분말(새우탕컵면 분말스프의 원료)로 제2106.90-905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 제(A)항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관세기구(WCO)에 본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2103.9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다. WCO 분류 사례는 국내 품목분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시할 수 없다.

가벼운 옐로우색 분말 형태로 조미료 제조에 사용되며 다양한 향료, 조미료 및 향미 물질(천연 방향물질, 천연과 동일한 방향물질, 합성 방향물질, 조제방향물질, 양념, 허브, 소금 등), 담체, 식품 첨가물, 착색제 및 지방으로 구성돼 있다. 조제품은 그 후 스낵류(크리스피, 크래커) 제조에 활용되는 완제품 조미료로 추가 가공된다. 제품은 25kg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겨 제공된다.

본 물품 또한 관자추출물과 다양한 조미 및 향미 성분, 소금 등이 혼합된 물품으로 분말스프 제조에 사용돼 해산물의 향을 내는 등의 조미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미료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울)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울)
FLAVORS IN PREPARATIONS	2106.90-9050 FCN1 0%	Other mixed seasonings	2103.90-9090 (A 8%)

“토마토는 채소” 판결로 소송까지?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현행 관세율표에서 오이·호박은 채소, 참외·수박은 과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식물학적으로 과일은 식물의 꽃에서 발달한 씨앗을 포함한 부분을 의미하며, 반면 채소는 식물의 뿌리, 잎, 줄기 등 과일 외의 다른 부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식물학적 관점에서 과일은 식물의 번식을 위해 씨앗을 보호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딸기 등은 식물학적으로 모두 과일이다.

반대로 감자, 당근, 시금치 등은 씨앗을 포함하지 않는 식물의 부분으로, 식물학적으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마토, 채소일까? 과일일까?

1893년 미국 대법원은 “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토마토는 덩굴식물의 열매이므로 채소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미국은 수입 채소로부터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채소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일은 무관세 품목에 해당됐다.

그런데 뉴욕항 세관이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해 관세를 매기자 토마토 수입상들이 과일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토마토가 채소로 분류돼 관세를 물게 되자 수입업자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다.

현행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도 유사한 대목이 나온다. 해설서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의 총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예 :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 애그 플랜트)·고추류(캡시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제7류) (b) 제9류에 분류하는 커피·바닐라·주니퍼의 열매와 그 밖의 물품 (c) 땅콩과 그 밖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로커스트 콩·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d) 코코아 두(제180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오이·호박·고추(신선) 등은 학술적 분류상으로는 과일이지만, 현행 관세율표에서 채소로 제7류에 분류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99호_2024.9.23.

최신개정법령

고시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고시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0호, 2024.9.10.)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5호, '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1. 주요 개정 내용

- 고시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2조 제4호, 제14호(신설), 제17조)
 -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임을 명확화
 - 용어 정비 : 단네이지 → 더니지(dunnage), 신조선박 → 새로 건조된 선박
- 수출용으로 새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
 - 수출신고수리전 선박용품의 적재승인을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운용하고, 보세운송승인 절차를 전산화하고 첨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17조 제3항의 서류의 중복제출을 생략
- 외국선박용품의 보세운송시 운송수단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19조)
 - 보세운송신고(승인)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도착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 선박용품 용도외처분보고서 제출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22조)

-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외처분 사유별로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

□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기한 설정(제23조)

-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하여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출 기한 설정

□ 별지 서식 개정

- 선박용품 적재허가서상 '용달선명'을 고시에 규정된 용어인 '작업선명'으로 변경하고, 적재허가서상 "적재완료"란 신설

2. 시행일자 : 2024. 9. 10.

※ 단, 수출용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는 시스템 개선 완료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세내용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9호, 2024.9.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15호, '23.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사유

-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산 완화
- ☐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 지정기간 2024.9.9. ~ 2026.8.31.
- ☐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제3조)
 -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제4조)

- 5년 → 3년 :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 ‘지정기한’ → ‘지정기간’ : 용어 수정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제4조의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제4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년 1회, '22년 1회, '23년 없음
-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제8조)

- (현행) 5일 이내 원칙 →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 ❶ (신고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의 신고항목(공급자명칭,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과 유통이력 신고항목(양수자상호, 사업자번호, 양도수량, 양도일)이 유사함
- ❷ (신고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서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 부하되, 월단위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문 및 용어 정비

○ 고시 목적 명료화(제1조)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규정 명확화(제12조)

- (현행) ‘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 제4항을 따른다’

○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제8조)

○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제8조의2)

○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제2조 3호, 4호, 6호, 7호, 10호
- 제4조 제1항, 제3항
- 제5조
-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2항
- 제8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제8조의2 제4항
- 제9조
- 제11조 제1항, 제3항

3. 시행일자 : 2024.9.9.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4호, 2024.9.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1. 제·개정 이유

-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대러시아 상황허가 품목 추가

2. 주요 내용

- 대러시아 상황허가 품목 추가 등 <별표2의 2, 별표24 개정>

부 칙 <2024-144호, 2024.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의2, 별표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 www.custracom.com 참조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1호, 2024.9.13.)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23호, '21.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 주요 개정 내용

- 출항허가사항의 정정 기한 확대(제10조 제2항)
 - 출항허가사항의 정정시 세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허가 24시간 후에도 정정 허용
 - ※ 청 지침(관세국경감시과-2192, '23.6.13.)을 고시에 반영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제13조 제3항 신설)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지정 고시」 규정을 본 고시로 통합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취소 신청서 마련(제14조 제4항 신설)
 -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신청서는 있으나, 취소 관련 서식이 없어 취소 신청서식 마련
- 국제무역선에서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승인받아야 하는 선박의 예외 사항 규정(제24조 제1항 제4호)
 - 국내운항선으로 자격전환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를 「해운법」에 따른 일시적 국내운송 신고하여 수리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

- 해양수산부로부터 일시적인 국내운송신고수리 받은 선박이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국제무역선 자격으로서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운항선으로 전환승인 받아야 하는 선박의 예외로 인정(「관세법」 제2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개정사항 반영)

가. 「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여 국제항 간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나. 「관세법」 제220조의2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다. 「관세법」 제221조에 따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 수입통관 선박의 국제무역선 자격전환 특례 허용(제25조의2 자격전환 특례 신설)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최초 입항할 때 수입통관해야 하는 선박 중 「해운법」상 외항선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내 운항계획 없이 계속하여 국제무역선으로 출항할 예정인 선박에는 국제무역선의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를 허용

- 새로 건조한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후 선박제조업체의 승선자 자율관리 허용(제32조 제3항 신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선박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수리 후 작업승선자에 대한 승선신고를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상시승선증의 발급이 가능한 영업등록업자에 대한 인용조문오류 정정(제40조 제5항)

-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FAX→팩스, 출국대합실→출국대기실, 항계→국제항의 수상구역, 묘박지→정박지, 징구→제출 등

2. 시행일자 : 2024. 9. 13.

3. 상세내용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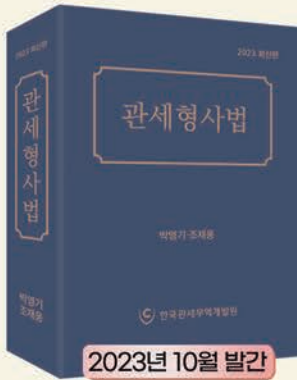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10%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